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도희재 의원 외 6인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 위임사항과 인용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14조, 제19조의2, 제25조, 제41조, 제70조 및 제82조)

나. 기록표결 원칙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1조)

다. 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

라.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및 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2조의2, 안 제52조의3 및 안 제52조의4 신설)

마.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로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규정 추가

- 의장의 위원회 출석발언 (안 제54조의2 신설)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83조의2 및 안83조의3 신설)

사.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0조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12. 17. ~ 12. 21.)

5.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와 기록표결 원칙 도입, 의회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본 규칙을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